



### 이사 사임의 효력발생시기

김 춘 대리(법제조사과)

#### 【질 의】

이사들의 임기 조정을 위하여 잔여임기가 남은 이사로부터 사임서를 받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하려고 합니다. 이 때 사임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주주총회 안건을 정하는 이사회 소집시에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주주총회 전날 받으면 되나요?

#### 【응 답】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위임에서의 수임인과 같이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

이사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또는 주주총회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으며 또한 사임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봅니다(고등법원 판례).

아울러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에게 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사임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판례).

사임의 의사표시 방법으로는 사임서에 의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이사회 회의에서 사임의사표시를 하고 그 내용을 의사록에 기록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사전에 주주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사임할 이사를 이사후보자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논리적으로 사임의사표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임의사표시는 대표이사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회사에게나 이

사 개인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사 지위의 공백이 없이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임서는 미리 제출하더라도 사임의 효력이 주주총회 종결시 또는 이사선임의안의 처리시에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효력발생시기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하는 문제이며, 이를 특별히 제한할 이유는 없으므로 언제까지 근무하고 사임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임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별도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함이 없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의 임기 조정을 위하여 사임하는 경우에는 사임서는 소집통지전에 제출하더라도 사임서에 사임시기를 주주총회 종료시 또는 이사선임의안 처리시까지로 명시하면 이사 지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실무에서 흔히 경영진들이 재신임을 묻기 위하여 대표이사에게 일괄하여 사표를 제출하고 그 처리를



## 실전상담사례

일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사들이 자신들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사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대표

이사가 사표를 수리한 때에 사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봅니다(대법원 판례).

### 당해법인의 사외이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과 새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사외이사의 사외이사직 유지 여부

윤정재 과장(조사총괄과)

#### 【질 의】

주권상장법인입니다. A법무법인의 B변호사가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당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C법무법인 소속 D변호사가 A법무법인으로 옮기게 되어 A법무법인과 새로이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B변호사는 사외이사 직을 상실하는 지 궁금하며,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 답】

우선 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4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6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 제외)”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중 당해 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중에 당해 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중에 당해 회사가 금전·유가증권 기타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

보제공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법인

4. 당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당해 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이상을 출자한 법인
5. 당해 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당해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4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6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



있던 자”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B 변호사는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사임을 하셔야 하며, 사임으로 인하여 사외이사 수가 법정사외이사 수에 미달하게 될 경우 사유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사외이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5항, 제191조의16 제3항).

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문계약의 의미는 당해 회사와 법무법인과 공식적으로 체결한 계약서에 의거 자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경우와는 조금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보수를 받고 법률자문을 행하는 개인변호사의 경우도 동일하게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증권거래법 제54조5, 동 시행령 제37조의6 제3항 제2호).

또한 법무법인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필요시 사안별로 자문을 받는 경우라도 법 취지상 그 금액이나 중요성이 커 자문계약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1건에 지나지 않아도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행사

김연수 주임(법제조사과)

### 【질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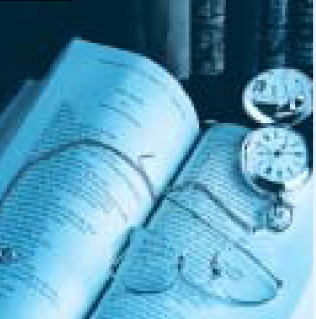
우리사주조합원은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아울러 감사선임시에 적용되는 3%의결권 제한 규정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도 적용받는지 여부?

### 【응 답】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 위임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우리사주조합의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요청을 확인하여 당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에게 당해 의결권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의사표시 또는 위임요청에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당해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를 흔히 Shadow voting이라고 하고 있습니다(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7조1항).



## 실전상담사례

또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조합계정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식중 조합과 사업주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식은 첫째,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비율과 동일한 비율대로 행사할 것, 둘째,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셋째, 조합원 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법상 감사선임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주주로부터 감사의 지위등에 있어

서 독립성을 부여하는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과 관련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행사방법은 조합장명의로의 주식이라도 실질상으로는 그 구성원들 개개인이 주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합원 개개인을 주주로 간주하여 조합원 개개인을 기준으로 3%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배정된 것이 아니므로 전체 주식에 대하여 3%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합원 개인이나 조합계정에 배정된 주식이 3%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감사 선임시 3%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겠습니다.

## 임금 또는 상여금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및 납세의무자

신미숙 주임/세무사(경제조사과)

### 【질 의】

임금 또는 상여금을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응 답】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양도”의 개념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련예규를 살펴보면 미불된 임금과 퇴직금 등의 미지급금 일체를 변제할 목적으로 소유주식을 법인이 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국세청소비12653-2295).

따라서 법인이 임금이나 상여금을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는 것은 대가성 있는 지급이므로, 유상으로 소



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법 제3조에서는 당해 주권의 양도자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직원에게 임금이나 상여금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증권선물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을 자사주를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증권거래세를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액을 미달 신고·납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법인은 증권거래세법 제15조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양도의 구분, 주권의 종류·수량·가액·세액, 양도연월일, 거래금액,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관련장부를 당해 신고일로부터 5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합니다.

## 시 사 경 제 용 어

### 탄소나노튜브

「한국인 유학생이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하여 필터를 개발한 연구결과가 ‘사이언스’지(誌) 19일자 표지논문에 게재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이 방법은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바닷물에서 염분을 걸러 내거나 공장 굴뚝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필터를 개발한 연구결과이다. 미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대 박사과정의 박형규(朴亨圭33) 연구원은 “지름이 2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인 **탄소나노튜브**가 촘촘히 박혀 있는 막(膜)은 기존 플라스틱 막보다 구멍 크기가 훨씬 작지만 공기와 물을 더 빨리 통과시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원하는 물질은 걸러내고 다른 분자들은 빠르게 통과시키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이 좋은 분리막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21일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밝혔다.(조선일보, 2006. 5. 22)」

탄소나노튜브는 탄소원자들이 가늘고 긴 대롱(튜브)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탄소구조물이다. 지름이 수십 나노미터(nm는 10억분의 1m)에 불과하다. 탄소나노튜브는 탄소 6개로 이뤄진 육각형들이 서로 연결돼 관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구리와 전기전도도가 비슷하고, 열전도율은 다이아몬드와 같다. 강도는 강철보다 1백배나 우수하다.

지난 1991년 일본 NEC의 이치마 수미오 박사가 탄소의 구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하였으며, 지름이 머리카락 1만분의 1에 불과한 벌집모양의 길다란 관으로 전기적·기계적 특성이 우수해 차세대 반도체의 소재로 연구되고 있다.

### 김치본드

「미국의 금융지주회사인 베어스틴스가 다음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억달러의 ‘**김치본드**’를 처음으로 발행한다. 김치본드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적이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베어스틴스가 만기 7년인 무보증사채 김치본드 5억달러를 발행하고 증권선물거래소에 이를 상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어스틴스는 지난 1923년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 미국내 증권회사 기준 7위 수준이다.(서울신문, 2006. 5. 25)」

김치본드란 국내 자본시장에서 원화 이외의 통화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달러를 직접 조달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발행되지 않았다. 미국투자은행이 베어스틴스가 2006년 6월 5억달러 규모의 김치본드를 처음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하는 채권은 ‘아리랑본드’라고 부른다.